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
----------	----

제출년월일 : 1997.11.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그동안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신고의식 정착으로 본 규정을 삭제코자하며,
- 대형폐기물 수거대상 품목을 세분화하고,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으로 현실화 시켜 대형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환경부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환경부개정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 수거대상 품목세분화와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함.(안제13조 제1항제2호 “별표3”)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삭제함(안제19조)
-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조정함(안제20조 “별표4”)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3조
- 환경부예규 제159호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별표3”을 별지1과 같이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별표4”를 별지2와 같이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은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생 략)</p> <p>1. (생 략)</p> <p>2.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p>	<p>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별표3의 기준----- -----</p> <p style="text-align: right;">※ 별표3을 별지1과 같이한다.</p>
<p>제19조(무단투기등신고포상금지급)</p> <p><u>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다.</u></p>	<p>제19조(삭 제)</p> <p>삭 제</p>
<p>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 -----</p> <p>별표4와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 별표4를 별지2와 같이 한다.</p>

[별지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원/개)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파쇄등)	비 고
냉장고 (자판기)	1000ℓ 이상	10,000	20,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 류 및 규격을 감안하 여 유사한 품목의 수 료를 준용
	500ℓ 이상	4,500	4,5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3,500	3,500	
	100ℓ 이상 300ℓ 미만	2,500	2,500	
	100ℓ 미만	2,000	2,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3,500	2,500	
	30인치 이상	3,000	2,000	
	14인치 이상 30인치 미만	2,500	1,500	
	14인치 미만	2,000	1,000	
세탁기	8kg 이상	3,000	3,000	
	8kg 미만	2,500	2,500	
에어콘 (실외기 또는 살내기)	264㎡형 이상	4,500	4,500	
	66㎡형 이상	3,500	2,500	
	66㎡형 미만	2,500	1,500	
	벽걸이	2,000	1,000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파쇄등)	비 고
탈수기	모든규격	1,500	1,500	
선풍기	모든규격	1,000	1,000	
비디오	"	1,500	2,500	
청소기	"	1,000	1,000	
전축	폭1m이상	2,000	1,000	
	폭1m미만	1,000	1,000	
전축스피커	1개당	500	500	
장농	가로100cm 이상1쪽당	10,500	5,500	
장식장책상	가로100cm 미만1쪽당	6,500	5,500	
침대(매트리스포함)	2인용	10,500	5,500	
	1인용	6,500	4,500	
매트리스	2인용	5,000	5,000	
	1인용	4,000	4,000	
안락의자 (쇼파)	3인용	4,500	4,500	
	2인용	3,000	3,000	
	1인용	1,500	1,500	
탁자	1m ² 이상	1,500	1,500	
	1m ² 미만	1,000	1,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5,000	
	5단미만	2,500	2,500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파쇄등)	비 고
신발장	가로1m이상	3,000	3,000	
	가로1m미만	2,000	2,000	
문갑	길이1m이상	3,000	3,000	
	길이1m미만	2,500	2,500	
화장대	가로90cm이상	5,000	10,000	
	가로90cm미만	4,000	6,000	
거울, 액자	1m'이상	1,000	1,000	
	1m'미만	500	500	
T·V장식대	모든규격(겸용제외)	1,000	1,000	
옷걸이	모든규격	500	500	
책상	120cm이상양수	3,500	3,500	
	120cm미만편수	3,000	3,000	
의자	대형	2,000	2,000	
	소형	1,500	1,500	
	보조간이의자	500	500	
캐비닛	높이100cm이상	2,000	1,000	
	높이100cm미만	1,000	1,000	
의장캐비닛	높이180cm1칸당	2,000	1,000	
책꽂이	모든규격	500	500	
PC본체	모든규격	1,000	1,000	
PC모니터	모든규격	1,500	1,000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파쇄등)	비 고
팩시밀리	모든규격	1,000	1,000	
프린트기	"	1,000	1,000	
복사기	"	3,000	2,000	
가스렌지	"	1,000	1,000	
가스오븐렌지 (전자오븐렌지)	"	2,500	2,500	
전자렌지	"	2,000	1,000	
싱크대	50cm이상	2,000	3,000	
	50cm미만	1,500	1,500	
싱크대찬장	1칸	1,500	1,500	
	2칸	3,000	3,00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1,000	1,000	
식기세척기	"	2,000	1,000	
전기밥통	"	500	500	
쌀통	"	1,500	1,000	
정수기	"	1,000	1,000	
식탁	6인이상	2,500	3,500	
	6인미만	2,500	2,500	
가방	모든규격	500	500	
간판	1m ² 당	2,500	2,500	
물탱크류	5드람이상	10,000	10,000	
	5드람미만	8,000	7,000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파쇄등)	비 고
가스,기름 보일러	모든규격	3,000	2,000	
기름탱크	2드람이상	3,000	2,000	
	2드람미만	2,000	1,000	
수족관	가로2m이상	5,000	5,000	
	가로2m미만	3,000	2,000	
시계	벽걸이용	500	500	
	대형입식용	2,000	1,000	
이불	홀이불	500	1,000	
	솜이불	1,500	1,500	
요(담요)	모든규격	1,000	1,000	
카펫트	3.3㎡당	2,000	3,000	
병풍	모든규격	1,500	1,000	
문자	"	1,500	1,000	
재봉틀	"	1,500	1,500	
피아노	그랜드	10,000	5,000	
	어프라이트	6,000	4,000	
타이어	승용차량	2,000	2,000	
	소형화물차량	3,000	3,000	
	대형화물차량	7,000	8,000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창틀	1m ² 이상	1,000	1,000	
	1m ² 미만	500	500	
목재류	100ℓ마대당	2,500	2,500	
	1톤당	30,000	30,000	
비닐, 장판, 천막	100ℓ마대당	3,000	3,000	
	1톤당	30,000	30,000	
자전거	소아용	500	500	
	성인용	1,000	1,000	
정화조	10인용이상	10,000	40,000	
	10인용미만	10,000	20,000	

[별지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시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린자	50천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100천원		
3.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등)을 버린자	200천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	200천원		
5.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5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린자 (법제24조제2항의 사업장 배출자 및 법제26조제2항의 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1,000천원		
나.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시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제6조제1항 위반자포함) 다.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50천원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 일반가정의 경우	50천원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폐기물 배출 자의 경우	100천원	200천원	400천원

- 위반행위가2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며 3차이상 위반시는 3차위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 구청장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제18조(생략)</p> <p>제19조(무단투기등신고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p> <p>(별표3)</p> <p>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개)</p>	<p>제1조~제18조(현행과 같음)</p> <p>제19조(삭제)</p> <p>(별표3)</p> <p>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품 목</th> <th style="width: 10%;">규 격</th> <th style="width: 10%;">수집·운반</th> <th style="width: 10%;">처리(소각, 파쇄등)</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냉장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d rowspan="14" style="vertical-align: middle;">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 의 수수료를 준용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ℓ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ℓ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ℓ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텔레비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42인치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인치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세탁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 규격</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에어콘</td> <td style="text-align: center;">264㎡형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형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형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body> </table>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냉장고	(신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 의 수수료를 준용	500ℓ 이상	4,000	4,000	300ℓ 이상	3,000	3,000	(신설)			(신설)			300ℓ 미만	2,000	2,000	(신설)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3,000	2,000	(신설)			(신설)			(신설)			12인치 이상	2,000	1,000	세탁기	모든 규격	2,000	2,000	(신설)			(신설)			에어콘	264㎡형 이상	4,000	4,000	66㎡형 이상	3,000	2,000	66㎡형 미만	2,000	1,000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품 목</th> <th style="width: 10%;">규 격</th> <th style="width: 10%;">수집·운반</th> <th style="width: 10%;">처리(소각, 파쇄등)</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냉장고 (자판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ℓ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rowspan="14" style="vertical-align: middle;">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 의 수수료를 준용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ℓ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ℓ 이상 500ℓ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ℓ 이상 300ℓ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ℓ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텔레비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42인치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인치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인치 이상 30인치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인치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세탁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kg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kg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에어콘 (실외기 또는 실내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264㎡형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형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형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벽걸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body> </table>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냉장고 (자판기)	1000ℓ 이상	10,000	20,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 의 수수료를 준용	500ℓ 이상	4,500	4,500	(삭제)			300ℓ 이상 500ℓ 미만	3,500	3,500	100ℓ 이상 300ℓ 미만	2,500	2,500	(삭제)			100ℓ 미만	2,000	2,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3,500	2,500	30인치 이상	3,000	2,000	14인치 이상 30인치 미만	2,500	1,500	14인치 미만	2,000	1,000	(삭제)			세탁기	(삭제)			8kg 이상	3,000	3,000	8kg 미만	2,500	2,500	에어콘 (실외기 또는 실내기)	264㎡형 이상	4,500	4,500	66㎡형 이상	3,500	2,500	66㎡형 미만	2,500	1,500	벽걸이	2,000	1,000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냉장고	(신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 의 수수료를 준용																																																																																																																																			
	500ℓ 이상	4,000	4,000																																																																																																																																				
	300ℓ 이상	3,000	3,000																																																																																																																																				
	(신설)																																																																																																																																						
	(신설)																																																																																																																																						
	300ℓ 미만	2,000	2,000																																																																																																																																				
	(신설)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3,000	2,000																																																																																																																																				
	(신설)																																																																																																																																						
	(신설)																																																																																																																																						
	(신설)																																																																																																																																						
	12인치 이상	2,000	1,000																																																																																																																																				
세탁기	모든 규격	2,000	2,000																																																																																																																																				
	(신설)																																																																																																																																						
	(신설)																																																																																																																																						
에어콘	264㎡형 이상	4,000	4,000																																																																																																																																				
	66㎡형 이상	3,000	2,000																																																																																																																																				
	66㎡형 미만	2,000	1,000																																																																																																																																				
	(신설)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냉장고 (자판기)	1000ℓ 이상	10,000	20,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 의 수수료를 준용																																																																																																																																			
	500ℓ 이상	4,500	4,500																																																																																																																																				
	(삭제)																																																																																																																																						
	300ℓ 이상 500ℓ 미만	3,500	3,500																																																																																																																																				
	100ℓ 이상 300ℓ 미만	2,500	2,500																																																																																																																																				
	(삭제)																																																																																																																																						
	100ℓ 미만	2,000	2,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3,500	2,500																																																																																																																																				
	30인치 이상	3,000	2,000																																																																																																																																				
	14인치 이상 30인치 미만	2,500	1,500																																																																																																																																				
	14인치 미만	2,000	1,000																																																																																																																																				
	(삭제)																																																																																																																																						
세탁기	(삭제)																																																																																																																																						
	8kg 이상	3,000	3,000																																																																																																																																				
	8kg 미만	2,500	2,500																																																																																																																																				
에어콘 (실외기 또는 실내기)	264㎡형 이상	4,500	4,500																																																																																																																																				
	66㎡형 이상	3,500	2,500																																																																																																																																				
	66㎡형 미만	2,500	1,500																																																																																																																																				
	벽걸이	2,000	1,000																																																																																																																																				

현 행	개 정 안
-----	-------

품 목	규 격	수량(단)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가스오븐	높이1m이상	2,000	2,000	
렌지	높이1m미만	1,000	1,000	
탈수기	모든규격	1,000	1,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1,000	1,000	
장농	120cm장1쪽	10,000	5,000	
	90cm장1쪽	6,000	4,000	
(신설)				
침대	2인용	10,000	5,000	
	1인용	6,000	4,000	
	매트리스	5,000	4,000	
소파	3인용	3,000	2,000	
	(신설)			
	(신설)			
책상	양수,대형	3,000	2,000	
	편수,소형	2,000	2,000	
식탁	6인용이상	3,000	2,000	
	6인용미만	2,000	2,000	
피아노	그랜드	10,000	5,000	
	어프라이트	6,000	4,000	
기 타	선풍기,문짜보통의자,이불,스치로폼포장재등	1,000	500	

품 목	규 격	수량(단)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삭제)				
탈수기	모든규격	1,500	1,500	
선풍기	모든규격	1,000	1,000	
비디오	"	1,500	2,500	
청소기	"	1,000	1,000	
전축	폭1m이상	2,000	1,000	
	폭1m미만	1,000	1,000	
전축스피커	1개당	500	500	
(삭제)				
장농	가로100cm이상1쪽당	10,500	5,500	
장식장책상	가로100cm미만1쪽당	6,500	5,500	
침대(매트리스포함)	2인용	10,500	5,500	
	1인용	6,500	4,500	
매트리스	2인용	5,000	5,000	
	1인용	4,000	4,000	
안락의자(쇼파)	3인용	4,500	4,500	
	2인용	3,000	3,000	
	1인용	1,500	1,5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품목	규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고	품목	규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고
(신설)					탁자	1㎡이상	1,500	1,500	
						1㎡미만	1,000	1,000	
(신설)					서랍장	5단이상	5,000	5,000	
						5단미만	2,500	2,500	
(신설)					신발장	가로1m이상	3,000	3,000	
						가로1m미만	2,000	2,000	
(신설)					문갑	길이1m이상	3,000	3,000	
						길이1m미만	2,500	2,500	
(신설)					화장대	가로90cm이상	5,000	10,000	
						가로90cm미만	4,000	6,000	
(신설)					거울, 액자	1㎡이상	1,000	1,000	
						1㎡미만	500	500	
(신설)					T.V장식대	모든규격 (겸용제외)	1,000	1,000	
(신설)					옷걸이	모든규격	500	500	
(신설)					책상	120cm이상 양수	3,500	3,500	
						120cm미만 편수	3,000	3,000	
(신설)					의자	대형	2,000	2,000	
						소형	1,500	1,500	
						보조간이의자	500	500	
(신설)					캐비닛	높이100cm 이상	2,000	1,000	
						높이100cm 미만	1,000	1,000	
(신설)					의장 캐비닛	높이180cm 1칸당	2,000	1,000	
(신설)					책꽂이	모든규격	500	500	
(신설)					PC본체	모든규격	1,000	1,000	
(신설)					PC모니터	모든규격	1,500	1,000	

현행					개정안				
품목	규격	수량	처리(소각, 파쇄등)	비고	품목	규격	수량	처리(소각, 파쇄등)	비고
(신설)					팩시밀리	모든규격	1,000	1,000	
(신설)					프린트기	"	1,000	1,000	
(신설)					복사기	"	3,000	2,000	
(신설)					가스렌지	"	1,000	1,000	
(신설)					가스오븐렌지 (전자오븐렌지)	"	2,500	2,500	
(신설)					전자렌지	"	2,000	1,000	
(신설)					싱크대	50cm이상	2,000	3,000	
(신설)						50cm미만	1,500	1,500	
(신설)					싱크대찬장	1칸	1,500	1,500	
(신설)						2칸	3,000	3,000	
(신설)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1,000	1,000	
(신설)					식기세척기	"	2,000	1,000	
(신설)					전기밥통	"	500	500	
(신설)					쌀통	"	1,500	1,000	
(신설)					정수기	"	1,000	1,000	
(신설)					식탁	6인이상	2,500	3,500	
(신설)						6인미만	2,500	2,500	
(신설)					가방	모든규격	500	500	
(신설)					간판	1㎡당	2,500	2,500	
(신설)					물탱크류	5드람이상	10,000	10,000	
(신설)						5드람미만	8,000	7,000	
(신설)					가스,기름 보일러	모든규격	3,000	2,000	
(신설)					기름탱크	2드람이상	3,000	2,000	
(신설)						2드람미만	2,000	1,000	
(신설)					수족관	가로2m이상	5,000	5,000	
(신설)						가로2m미만	3,000	2,000	
(신설)					시계	벽걸이용	500	500	
(신설)						대형입식용	2,000	1,000	

현행					개정안				
품목	규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고	품목	규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고
(신설)					이불	홀이불	500	1,000	
						숨이불	1,500	1,500	
(신설)					요(담요)	모든규격	1,000	1,000	
(신설)					카펫트	3.3㎡당	2,000	3,000	
(신설)					병풍	모든규격	1,500	1,000	
(신설)					문짝	"	1,500	1,000	
(신설)					재봉틀	"	1,500	1,500	
(신설)					피아노	그랜드	10,000	5,000	
						어프라이트	6,000	4,000	
(신설)					타이어	승용차량	2,000	2,000	
						소형화물차량	3,000	3,000	
						대형화물차량	7,000	8,000	
(신설)					창틀	1㎡이상	1,000	1,000	
						1㎡미만	500	500	
(신설)					목재류	100ℓ 마대당	2,500	2,500	
						1톤당	30,000	30,000	
(신설)					비닐, 장판, 천막	100ℓ 마대당	3,000	3,000	
						1톤당	30,000	30,000	
(신설)					자전거	소아용	500	500	
						성인용	1,000	1,000	
(신설)					정화조	10인용이상	10,000	40,000	
						10인용미만	10,000	20,000	

현행	개정안
----	-----

(별표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관련)

(별표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관련)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가. (생략)			
1.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린자	25천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50천원		
3-5. (생략)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린자(법제14조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법제17조제1항의 처리업자는 제외)	1,000천원		
나. (생략)			
1.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 다량배출자 -----	50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가. (현행과 같음)			
1. -----	50천원		

2. -----	100천원		

3-5. (현행과 같음)			
6. -----	-----		

(법제24조제2항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법제26조제2항의 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나. (현행과 같음)			
1. 법제24조 -----	-----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다. (생략) 1.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u>다량배출자</u> 의 경우 2-3. (생략)	40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다. (현행과 같음) 1. 법제24조 ----- ---- <u>사업장폐기물</u> <u>배출자</u> ---- 2-3. (현행과 같음)			